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 강대식 · 이종배 · 김석기

권영세 · 임이자 · 엄태영

임종득 • 곽규택 • 김승수

조지연 · 강승규 · 김희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 너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

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자녀가 1명인	자녀가 2명인	자녀가 3명
	경우	경우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과세표준의	과세표준의
1,400 년 년 이이	4퍼센트	3퍼센트	2퍼센트
	56만원 +	42만원 +	28만원 +
1 400 ਸੀ ਹੈ ਤੋਂ ਹੀ	(1,400만원을	(1,400만원을	(1,400만원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5,000원원 역하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13퍼센트)	12퍼센트)	11퍼센트)
E 000 ml ol => ml	524만원 +	474만원 +	424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000만원을	(5,000만원을	(5,000만원을
0,000 관련 위에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22퍼센트)	21퍼센트)	20퍼센트)
	1,360만원 +	1,272만원 +	1,184만원 +
8,800만원 초과	(8,800만원을	(8,800만원을	(8,800만원을
1억5천만원 이하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1 = 5전 한 천 역 이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33퍼센트)	32퍼센트)	31퍼센트)
	3,406만원 +	3,256만원 +	3,1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을	(1억5천만원을	(1억5천만원을
3억원 이하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3 구천 이이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36퍼센트)	35퍼센트)	34퍼센트)
	8,806만원 +	8,506만원 +	8,206만원 +
2여의 국회	(3억원을	(3억원을	(3억원을
3억원 초과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5억원 이하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38퍼센트)	37퍼센트)	36퍼센트)
	1억6,406만원 +	1억5,906만원 +	1억5,406만원 +
두어 이 국 코	(5억원을	(5억원을	(5억원을
5억원 초과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10억원 이하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40퍼센트)	39퍼센트)	38퍼센트)
	3억6,406만원 +	3억5,406만원 +	3억4,406만원 +
	(10억원을	(10억원을	(10억원을
10억원 초과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43퍼센트)	42퍼센트)	41퍼센트)

フシント	1
종합소득	. N . O
3 3	세 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00만원 이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800만원 이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5천만원 이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억원 이하	38퍼센트)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억원 이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억원 이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7 7 2 4	45퍼센트)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5조(세	율) ①) 거=	주지	-의 -	종합소
득에 대	한 소	득세	는	해당	· 연도
의 종합	소득되	막세 포	도준	에 1	가음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	산한	금액
(이)하	"종합.	소득(산출	세인]"이라
한다)을	그 서]액으	.로	한다	<u>}.</u>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u> </u>		<u>.e.</u>	
1,400만원	과,	세표준	들의	6퍼선	<u> </u>

<u> 종압소</u>	세 율
과세표준	<u> 게 </u>
1,400만원	키게로즈이 C되게드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u> 초과</u>	84만원 + (1,400만원을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u>이하</u>	
5,000만원	
<u> 초과</u>	<u>624만원 + (5,600만원을</u>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이하	
8,800만원	
<u>초과</u>	1,536만원 + (8,800만원을
<u>1억5천만</u>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원 이하	
1억5천만	
<u>원 초과</u>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3억원_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u>이하</u>	
3억원	9,406만원 + (3억원을
<u>초과</u>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 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 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u>종합소득</u> 과세표준	자녀가 1명인 경우 세율	자녀가 2명인 경우 세율	자녀가 <u>3명</u> 이상인 경우 세율
4 400 3 43	과세표	과세표	과세표
<u>1,400만원</u> 이하	<u>준의</u>	<u>준의</u>	<u>준의</u>
1 91	<u>4퍼센트</u>	<u> 3퍼센트</u>	<u>2퍼센트</u>
	56만원	42만원	28만원
	+	+	+
1,400만원	<u>(1,400만</u>	<u>(1,400만</u>	<u>(1,400만</u>
<u>초과</u>	<u>원을</u>	원을	<u>원을</u>
5,000만원	<u>초과하</u>	<u>초과하</u>	<u> 초과하</u>
<u>이하</u>	는_	는_	는_
	금액의	금액의_	금액의
	<u>13퍼센</u>	<u>12퍼센</u>	<u>11퍼센</u>

<u> 5억원</u>	
<u>이하</u>	
5억원	
<u>초과</u>	1억7,406만원 + (5억원을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이하	
10억원	3억8,406만원 + (10억원을
<u> 초과</u>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u>트)</u>	<u>트)</u>	<u>트)</u>
	524만원	<u>474만원</u>	424만원
	+	+	+
5,000만원	(5,000만	<u>(5,000만</u>	<u>(5,000만</u>
	<u>원을</u>	<u>원을</u>	<u>원을</u>
<u>초과</u>	<u>초</u> 과하	<u>초과하</u>	<u>초과하</u>
8,800만원	는_	늰	<u>는</u>
<u>이하</u>	금액의_	금액의_	금액의
	<u>22퍼센</u>	<u>21퍼센</u>	<u>20퍼센</u>
	<u>트)</u>	<u>트)</u>	트)
	1,360만	1,272만	1,184만
	원 +	원 +	원 +
0 000 मी 6]	(8,800만	<u>(8,800만</u>	<u>(8,800만</u>
8,800만원	원을_	원을	<u>원을</u>
<u>초과</u>	<u>초과하</u>	<u>초과하</u>	<u>초과하</u>
1억5천만	느	느	<u>는</u>
<u>원 이하</u>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u>33퍼센</u>	<u>32퍼센</u>	<u>31퍼센</u>
	<u>트)</u>	<u>트)</u>	<u>트)</u>
	<u>3,406만</u>	<u>3,256만</u>	<u>3,106만</u>
	원 +	원 +	원 +
1 어드린 교	(1억5천	<u>(1억5천</u>	(1억5천
1억5천만	<u>만원을</u>	<u>만원을</u>	<u>만원을</u>
<u>원 초과</u>	<u>초</u> 과하	<u>초</u> 과하	<u>초과하</u>
3억원_	<u> </u>	<u> </u>	<u> 느</u>
<u>이하</u>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u>36퍼센</u>	<u>35퍼센</u>	<u>34퍼센</u>
	<u>트)</u>	<u>트)</u>	<u>트)</u>
3억원	8,806만	8,506만	8,206만
<u> 초과</u>	원 +	원 +	원 +
5억원	(3억원을	<u>(3억원을</u>	(3억원을

	<u>초과하</u>	<u> 초과하</u>	<u>초과하</u>
	늰	닏	<u>는</u>
이하	금액의_	금액의	금액의
	<u>38퍼센</u>	<u>37퍼센</u>	<u>36퍼센</u>
	<u>트)</u>	<u>트)</u>	<u>트)</u>
	1억6,406	1억5,906	1억5,406
	만원 +	만원 +	만원 +
<u>5억원</u>	(5억원을	<u>(5억원을</u>	(5억원을
<u> 초과</u>	<u>초과하</u>	<u> 초과하</u>	<u>초과하</u>
10억원	늰	닏	<u>는</u>
이하	금액의_	금액의	금액의
	<u>40퍼센</u>	<u>39퍼센</u>	<u>38퍼센</u>
	<u>E)</u>	<u>트)</u>	<u>E)</u>
	3억6,406	3억5,406	3억4,406
	만원 +	<u>만원 +</u>	만원 +
	(10억원	<u>(10억원</u>	(10억원
10억원	<u>의</u>	<u> </u>	<u>이</u> 교
<u>10 국 원</u> 	<u>초과하</u>	<u> 초과하</u>	<u>초과하</u>
<u> 24</u>	는	<u> 는</u>	느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u>43퍼센</u>	<u>42퍼센</u>	<u>41퍼센</u>
	<u>E)</u>	<u>E)</u>	<u>E)</u>

<u>2. 그 외의 경우</u>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u>게 된</u>
1,400만원	과세표준의 6퍼센트
<u>이하</u>	<u> </u>
1,400만원	84만원 + (1,400만원을
<u>초과</u>	
<u>5,000</u> 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이하	
5,000만원	
<u> 초과</u>	624만원 + (5,600만원을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u>이하</u>	
8,800만원	
<u>초과</u>	1,536만원 + (8,800만원을
1억5천만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u>원 이하</u>	
<u>1억5천만</u>	
<u>원 초과</u>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u>이하</u>	
3억원	
<u> 초과</u>	9,406만원 + (3억원을
<u>5억원</u>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u>이하</u>	
<u>5억원</u>	
<u> 초과</u>	1억7,406만원 + (5억원을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u>이하</u>	
10억원	3억8,406만원 + (10억원을
<u>초과</u>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